

의안 번호	제3346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11월 16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11월 26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11월 27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11월 27일

2. 제안이유

-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통합 설치·운영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규정 목적 일부 변경(안 제1조)
- 나.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 신설(안 제10조)
- 다.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신설(안 제12조)
- 라.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신설(안 제16조)
- 마.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분과위원회 신설(안 제20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(「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」)의 위원회를 통합 설치·운영하고 그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
-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 신설을 통해 재난·안전 관리 사업예산 편성 및 투자 시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,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,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정함으로써 재난 예방 및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회가 많아지는 만큼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·협의회별 운영 목적과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.
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